

거창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
번호 2002~14

제출연월일 : 2002. 4. .
제 출 자 : 거 창 군 수

개정이유

- 행정기관의 「주5일 근무제 시범실시」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(토요일휴무제 도입)하고,
- 일반 휴직자의 연가 가능일수 계상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연가 공제방법 개선(연가수혜 범위의 확대)하기 위함

주요골자

- 군수는 필요한 경우 토요일에 휴무하게 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6조의2제1항)
- 휴직자의 연가가능일수 산정방법의 개선(안 제20조제2항)
 - 현행, 「연가일수에서 휴직 일수를 바로 공제」하는 방식에서,
 - 당해 연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연가를 할 수 있도록 「휴직일수를 월할로 환산하여 공제」함
- 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이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으로 명칭이 변경('01년 6월)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함(안 제22조)

개정근거

- 지방공무원복무규정
-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표준안(2002.3.26)

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

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

제16조의2의 조제목“토요일전일근무제”를 “토요일휴무제 및 전일근무제”로 한다

제16조의2 제1항중 “2개조로 나누어 교대로 전일 근무하게 하거나”를 “월1회 동시에 휴무하게 하거나, 2개조로 나누어 교대로 전일 근무하게 하거나 또는”으로 하고,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

②토요일휴무제 및 전일근무제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

제20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“동조제2항 내지 제3항”을 “동조제3항 내지 제4항”으로 하고,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①결근일수·정직일수 및 직위해제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.

②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은 당해 연도의 휴직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연가일수를 월할 계산한다. 이 경우 휴직일수가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, 15일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며, 월할계산에 의하여 산정된 연가일수가 소숫점 이하일 경우 0.5일 이상은 반올림하고, 0.5일미만은 절사한다.

○ 휴직자의 연가일수 = $\frac{12\text{월}-\text{당해년도 휴직기간}}{12\text{월}} \times \text{당해년도 연가일수}$

제22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5.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검진을 할 때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6조의2(토요전일근무제)①</p> <p>주민편익의 증진과 업무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군수는 토요일에 소속공무원을 <u>2개조로 나누어 교대로 전일 근무하게 하거나, 소속공무원 전원을 격주로 전일근무하게 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②토요전일근무제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.</u></p>	<p>제16조의2(토요일휴무제 및 전일근무제)①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<u>월1회 동시에 휴무하게 하거나, 2개조로 나누어 교대로 전일 근무하게 하거나 또는 소속공무원 전원을 격주로 전일 근무하게 할 수 있다</u></p> <p><u>②토요일휴무제 및 전일근무제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.</u></p>
<p>제20조(연가일수에서의 공제)</p> <p><u>①결근일수 · 휴직일수 · 정직일수 및 직위해제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. 다만,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</u></p>	<p>제20조(연가일수에서의 공제)</p> <p><u>①결근일수 · 정직일수 및 직위해제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.</u></p>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<신 설></u></p> <p><u>②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참 · 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.</u></p>	<p><u>②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은 당해연도의 휴직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연가 일수를 월할 계산한다. 이 경우 휴직일수가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,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며, 월할 계산에 의하여 산정된 연가일수가 소숫점이하 일 경우 0.5일 이상은 반올림 하고 0.5일 미만은 절사한다.</u></p> <p><u>○ 휴직자의 연가일수 =</u></p> $\frac{12\text{월}-\text{당해년도휴직기간(월)}}{12\text{월}} \times \text{당해년도 연가일수}$ <p><u>③(현행 제2항과 같음)</u></p>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③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가중 연간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제공한다. 다만,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</u></p> <p>제22조(공가)(생 략)</p> <p>1. ~ 4(생 략)</p> <p>5. <u>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할 때</u></p>	<p><u>④(현행 제3항과 같음)</u></p> <p>제22조(공가)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~ 4(현행과 같음)</p> <p>5. <u>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검진을 할 때</u></p>